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의2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수가 10건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2. 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3.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

립된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 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5. 보험연구원

②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의 수가 10건 이상인 경우에는 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영 별표 4 각 호 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가 실시하는 영 별표 4 각 호 가목1) 및 2)에 관한 교육을 5시간(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부교육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법 제87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6. 제5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단체
 - 가.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나.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8.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9. 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1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11. 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13.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 “법인보험대리점”, “다음 각 호의” 및 “갓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을

두어야”를 각각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한다)”, “별표 제5의5의” 및 “모두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11조의3을 삭제한다.

제4-11조의4를 삭제한다.

제4-35조의2제2항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 또는 가게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게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은 제외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4-35조의2제3항 중 “중요사항을”, “항목별 확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각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해당 모집종사자의 소속·지위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아”, “확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경우
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제4-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험회사가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명 대상 보험계약.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설명 시기 :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

3. 설명시 준수 사항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⑧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마목의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2.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비 수준

나. 해약환급금

3.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

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4.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4호라목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
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
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
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4호바목의 “그 밖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35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를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5조의5제1항 중 “협회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협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협회에 제공”을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 또는 보험요율산출기

관”을 “집중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를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한다.

제4-36조의2제1호 중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로 한다.

제4-38조제1호 중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및 영 제4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를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

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은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

제6-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73조제2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성보험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보험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7-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입설계서”를 각각 “상품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입설계서” 및 “포함한다.)”를 각각 “상품설명서” 및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분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다. 제7-45조제4항 중 “보험설명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을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을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 지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상품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를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로 한다.

제7-45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를 “보험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

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로 한다.

제7-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제5호 및 제6호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은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로 산출하고,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회사별로 산출)로”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그 밖의 특이사항 등 :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 비교·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제9호와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7호) 중 “.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변경보험료를 안내하기 이전에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함”을 “ :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 비교·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6호”를 “제6호 :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 비교·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사항”을 “사항 :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 비교·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보험가격지수”를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 비교·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및 청약철회비율”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비교·공시”로 하며, 같

은 항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보험금 청구지급” 및 “소송 제기 비율”을 각각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및 “소송 제기 비율 등 : 보험회사별 비교·공시”로 한다.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 및 보험금 만족도 : 보험회사별 비교·공시

8.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 보험회사별 비교·공시

10.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 보험회사별 비교·공시

제7-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및 제2항”을 “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46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이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7-4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을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

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제7-48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7-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64조제4호 중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7-7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

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⑦ 보험회사가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80조제5항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을 “손익분석기준”으로 한다.

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의3(순보험요율 산출·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제4항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2조제4항제2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제9-2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별표 5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5의5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6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7의2 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부분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u>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p>제1-7조(광고) 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u>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u></p> <p>② ~ ⑤ (생략)</p> <p>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u>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외부교육기관을 포함한다.</u></p>	<p>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 ---- 인터넷-----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광고) ① ----- ----- 인터넷 ----- ----- ----.</p> <p>② ~ ⑤ (생략)</p> <p>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u>법 제85조의2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영 별표 4 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u></p>

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수가 10건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2. 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3.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 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5. 보험연구원

②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

<신 설>

② 영 별표 4에 따른 외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 등이 실시하는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교육기관

가. 보험연수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다. 보험연구원

2. 제1호에 따른 외부교육기관

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의 수가 10건 이상인 경우에는 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영 별표 4 각 호 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가 실시하는 영 별표 4 각 호 가목1) 및 2)에 관한 교육을 5시간(단 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2. ----- 기관 -----

소속 강사(모집종사자협의회
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3. (생략)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

3. (현행과 같음)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법 제87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6. 제5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

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 또는

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단체

가.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8.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9. 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11. 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①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13.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점 계약의 기간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계약당사자의 사 전승낙없이 계약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보험대리점이 법 제8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2.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때

3. 보험대리점이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거나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 때

4. 법인보험대리점이 법인보험 대리점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 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5. 보험대리점이 최근 3년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6.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
손해보험대리점인 손해보험대
리점이 부수사업으로서의 모집
업무 이외의 본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때

② 대리점계약 기간중에 계약당
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대리점계
약의 중도해지를 요청받은 때에
는 다른 일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해지여부를 결
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
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영 제33조의2제1항 본
문에서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 중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
리점’은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
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이하 이 조에서 “법
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서 해당 요건 충족 후 3개월이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삭 제>

경과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다만,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①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한다)-- 별표 제5의5의 ----- 모두 갖추어야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자

<삭 제>

2. 보험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삭 제>

3. 최근 3년간 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삭 제>

③ 준법감시인은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삭 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
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하
여야 한다.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
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⑥ 제1항의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
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삭 제>

제4-11조의3(장부 등의 작성비치)

<삭 제>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
사 예금계정의 입금확인증철
 4.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②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이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1조의4(보험대리점 시설 등)

<삭 제>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상호 또는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② 보험대리점은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항목별로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신 설>

하는 보험계약

③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해당 모집종사자의 소속·지위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아 -----
----- 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

<신 설>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보험금액 등이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한 출국만기보험계약, 귀국비용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는 경우

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④ -----

----- 제95조의2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⑤ -----

----- 제
95조의2제1항-----
-----.

⑥ -----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⑦ 변액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5조의2제1항-----
-----.

1.·2. (현행과 같음)

⑦ 보험회사가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명 대상 보험계약.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설명 시기 :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

3. 설명시 준수 사항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⑧ 감독원장은 제7항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 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⑧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마 목의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2.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비 수준

나. 해약환급금

3.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

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신 설>

4.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4호라 목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

<신 설>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 사항 등) ① ~ ⑤ (생략)

<신 설>

⑥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

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4호바
목의 “그 밖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
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 사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
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
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
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른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생방송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협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

② -----

-----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 . <단서 삭제>

협회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단체보험계약 등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협회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

③ 집중기관-----

-----.

④ -----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
-----.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 -----인터넷 -----

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 ⑬ (생략)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 4. (생략)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및 영 제43조제4항

-.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

-----.

1. -----

----- 상품설명서 -----

2. ~ 4. (현행과 같음)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운영 기준) ① -----

-----.

1. -----

-----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

2. ~ 6. (생략)

② (생략)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 3. (생략)

③ ~ ⑦ (생략)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가입설계서, 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가입설계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을 산출하여 보험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상품설
명서, -----
----- 상품
설명서-----

----- 제1호-----
-----.

1. ----- 상품
설명서, -----

-----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명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보험료적립금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

④ -----
-----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

⑤ (현행과 같음)

⑥ -----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

-----.

1. ~ 7. (현행과 같음)

⑦ -----
-----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

해 안내한다.

⑧ (생략)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4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①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 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이하 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이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상품에 한한다)를 ----- . -----

⑧ (현행과 같음)

⑨ -----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

제7-4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① -----
- 보험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제5호 및 제6호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은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로 산출하고,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회사별로 산출)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

② (현행과 같음)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1. -----

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사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7.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변경보험료를 안내하기 이전에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2. 제7-45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제6호

3.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 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4.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 그 밖의 특이사항 등 :
보험회사별 · 보험종류별 비교
· 공시

2.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 보험회사별 · 보험종류별 비교 · 공시

3. -----
----- 제6호 : 보험회사별
· 보험종류별 비교 · 공시

4. -----

----- 사
항 : 보험회사별 · 보험종류별
비교 · 공시

5. -----

----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
위지수 : 보험회사별 · 보험종
류별 비교 · 공시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및 청약철회비율

<신 설>

<신 설>

6.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신 설>

② (생략)

<신 설>

6. -----

--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 보험회사별 · 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비교 · 공시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 및 보험금 만족도 : 보험회사별 비교 · 공시

8.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 보험회사별 비교 · 공시

9.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

---- 소송 제기 비율 등 : 보험회사별 비교 · 공시

10.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 보험회사별 비교 · 공시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③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7-4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을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영 별표 6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 기재사항) 보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삭 제>

<삭 제>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 기재사항) -

②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수정·사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와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⑦ 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보험요율 및 보험금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80조(손익분석)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80조(손익분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손익분석기준 -----

-----.

제9-4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매년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
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제9-4조의3(순보험요율 산출·검
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
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
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
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
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
(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
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생 략)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
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
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
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
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
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
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② -----

----- 제32조제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2 제16호나목-----

알려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제2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⑧ (생략)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신설>

-----.

③ -----

----- 제32조제4항제2호 내지 제10호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1]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를 1명 이상 둘 것
 - 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1)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자
 - 나. 보험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 다. 최근 3년간 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할 것
 - 다.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라.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할 것
4.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줄 것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별지 2]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1) 보험영업 실적에 대한 추가 수수료 또는 실적과 관계없는 시책을 요구하는 행위

2) 대리점이 단독으로 기획·운영하는 행사(워크숍, 세미나, 연도행사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

3) 대리점 자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 소모성 경비(잉크, 토너비 등), 집기·비품을 무상으로 요청하는 행위

4) 대리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대리점 자체 회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 요청하는 행위

5) 실적 달성을 위한 부당한 계약을 요청하는 행위

2. 준수사항. 단, 가목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나.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 등록번호

2) 상호 및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라.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바.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험료수납부

-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 3) 사목에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 4)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 5) 회계장부
-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별지 3]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배 점
	대 분 류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100점
	(2)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100점
	(3)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보험	100점
손 해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100점
	(2) 손해보험 1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100점
	(3) 손해보험 2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및 상법중 해상편(제5편), 항공·우주보험, 재보험	100점
제 3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100점
	(2) 제3보험 1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150점
	(3)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	50점